

##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언

김선문<sup>o</sup>

<sup>o</sup>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e-mail: 75204000@hanmail.net

### A Suggest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orrection Welfare to Juvenile Criminal

Sun-Moon Kim<sup>o</sup>

<sup>o</sup>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 요약 ●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보호기관이 교정·교화라는 교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소년범죄자(juvenile criminal), 교정복지(correction welfare), 재범(recidivism)

####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지속적인 양적증가와 함께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 등 질적 심각성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다. 1980년대 20%, 90년대 25%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00년대 들어 30% 이상으로 치솟았다. 특히 전체 소년범죄자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교화에 실패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1]

소년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최근의 소년 범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의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자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흉포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의 전문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범행이 거듭될수록 단독범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경력발전에 따라 대담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과연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다.[2]

소년범죄자가 재범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인범죄자로 변모하게 되고,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축소되어 그들이 겪는 복지수준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3]

따라서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 유지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소년범죄

##### 1. 소년범죄의 개념

소년범죄는 소년과 범죄의 복합개념으로 소년의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범죄의 의미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여건들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년범죄의 의미도 복잡 다단하게 해석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형벌명령을 위반한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4] 우리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제2호에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의한 촉범행위’를 의미한다. 동조 제3호에 정한 우범(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소년범죄의 유형

소년범죄의 유형은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위조범죄 등의 형법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특별범죄로 나누어진다.

형법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범죄(폭력)와 재산범죄이다. 강력범죄(폭력)는 상해, 폭행,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말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강력범죄(폭력)의 약 70%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폭행, 상해, 공갈의 순이다.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령, 장물, 배임 등이 포함되는데, 매년 절도죄가 약 80%로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 횡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흉악)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발생비율은 강력범죄(폭력) 및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많지 않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범죄는 소년범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이 각각 특별범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있다.

## 3. 소년범죄의 현황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1999년에 143,155명을 기록한 이후 10만 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7,478명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134,99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자의 점유비율은 2000년 6.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5.5%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초범은 2004년 64.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69.1%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과 1범은 2004년 16.2%에서 2008년 13.5%로 감소하는 등, 전과범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2008년 성인 4.6%에 비해 소년 재범률은 9.0%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5]

## 4. 소년범죄의 단계별 처리

### 4.1 경찰단계의 처리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죄자에게 최초 접근하는 경찰은 형사입건을 하여 이를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고 있다. 그러나 촉범소년,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엄중훈계 후 즉시 석방하기도 한다. 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 6항과 제21조에 따라 불량행위소년으로 간주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년풍기사범으로 처리되어 훈방조치를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처벌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6]

### 4.2 검찰단계의 처리

소년법에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란 점을 감안하여 소년범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검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각각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죄성립여부를 확정된 후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벌금형 등의 일반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원에서 심판절차를 행한다.

### 4.3 법원단계의 처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사안에 따라 심리개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다. 심리불개시의 경우 소년에 대한 훈계, 보호자에 대한 교육·관리의 고지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다. 심리 결과 후 받는 보호처분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있다.

## III. 교정복지

### 1.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란 사회복지학의 한 분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관을 근간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미시적 접근방법으로는 개인·가정 및 지역사회 단위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어 활용토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교정·교화는 물론 그들의 건강한 재사회화와 그들이 속한 가정의 안정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총체적 활동을 일컫는다. 거시적으로 보면, 교정복지는 범죄인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범죄문제를 해당 범죄인의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왜곡된 사회구조의 시정과 범죄를 유발시킨 환경요인을 개선코자 하는 사회재통합적인 관점에 의해 국가정책과 제도의 마련에 관여한다.

이러한 교정복지의 관점은 범죄인이 사회적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명제에 기꺼이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법적 낙인이 범죄인의 사회복지와 재통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사실적 입중에 연유한 것이다.[7] 따라서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궁극적으로 사회보호를 목표로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교정복지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사회보호에 앞서 범죄인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시하고 있다.[8]

### 2. 교정복지의 기능

교정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9]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교정복지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한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 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 3. 교정복지의 실천

교정복지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사후에 교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사회전반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시간, 노력의 비용 등에 있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위주 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개선과 교육, 직업, 복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사업과 활동들이 요구된다.[10]

선진 각국에서는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죄인들의 교정·교화·사회재적응 지원 등의 활동들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원과 같은 시설의 전문가 상당수가 사회복지사 및 교육학, 심리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정복지 현장이 다른 어느 사회복지 현장 못지않게 사회복지의 가치가 구현되고 사회복지 및 인간행동 관련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교정복지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며, 아직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소년원, 교도소 등 보호시설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방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정수준 전문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내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등의 교정현장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인간행동 관련 전문가들의 투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정현장의 이러한 개방화와 전문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비록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선진 각국과 같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개인적 자립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증진도 이루어져야 한다.[11]

## IV. 결어

소년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소년이 강력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성인범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처벌이나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늘어나는 소년범죄와 그 재범률을 보았을 때,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보호기관이 범죄학습 공간화로 되고 있다. 소년구치소가 따로 없는 관계로 미결구금 소년범죄자들이 미결구금 성인범들과 함께 섞여있어 기관 자체가 범죄의 학습공간이 되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면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해 소년의 자질을 분류하는 소년 분류심사원의 경우도, 대개 한달 정도의 수용기간 동안 소년범죄자들이 수용소문화를 익히기 때문에 범죄성향이 비교적 적은 소년범죄자가 범죄문화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상담·감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이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찰관의 활동이 월1회 정도의 상담을 통한 형식적인 감사·감독 위주에 그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위탁처분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다.

이처럼 시설내처우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교정시설 내에서 학습되는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은 오히려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고 있다.[12]

이와 같은 한계들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가 한차례의 실수나 통과의례처럼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못지않게, 범죄 이후 범죄의 발전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

결과적으로 소년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재학습을 양산하는 기존의 형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소년범죄자는 교정·교화 이후 사회에 복귀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며, 소년범죄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성인범죄자에 비해 클 것이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있어 기존의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제도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년범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작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정복지의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며,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범을 방지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은 교정복지적 관

점을 갖고, 이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99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995.html).
- [2] 김은경·이동원,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1., p.171.
- [3] 조기론, “재통합적 교정패러다임의 설정과 구체적 전략의 모색”, 초당 김화수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한국교정학회, 2006, p.471.
- [4] 배중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p.423.
- [5]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pp.111-399.
- [6] 김순자,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8.
- [7] 홍봉선, 「교정복지론」, 현학사, 2004, p.23.
- [8] 천정환, 「교정복지학」, 대왕사, 2005, p.21.
- [9] 이윤호, “사회복지관에서 교정복지의 활성화 방안”, 한국복지재단, 동광, Vol.98, pp.44-45.
- [10] 문영희, “비행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정복지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Vol.8, p.152.
- [11] 홍봉선,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36호, 2007, pp.121-122.
- [12] 이장현·우룡·조혜경,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12., pp.112-113.